

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<5월 2차>



-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대상 규제 38건
-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

규제예보

AI 연구소 설립 주체·요건·절차·자료제출 등

관련법령 :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(과기부) 입법예고 : '26.5.21.~ '26.6.19.

주요 내용

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요건 규정

요건

-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보유
- 해당 분야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갖춘 전담인력 5인 이상 확보
- 고성능 연산 자원과 데이터 저장·처리 설비를 직접 보유하거나,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체계를 갖출 것 등

허가 절차

- 인공지능 설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
 - ※ 세부 절차 및 서식 등은 추후 고시 예정
- ※ 세부 내용은 과기부 접속 후 입법예고·행정예고에서 해당 법령명 검색 후 확인 가능



- ▶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업·협단체는 '26.6.12(금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<https://moaform.com/q/esg8Nc> 또는 좌측 QR코드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.
- ▶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합니다.

- ▶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업·협단체는 **6월 5일(금)까지**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AI 연구소 설립 주체·요건·절차·자료제출 등(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)은 **6월 12일(금)까지** 의견제출
- ▶ <https://moaform.com/q/esg8Nc> 또는 상단 QR코드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.
- ▶ 세부내용은 [국민참여입법센터](#), [규제정보포털](#) 또는 [해당부처](#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- ① 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: 통합입법예고→(부처)입법예고/행정예고
 - ②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): 규제개요→규제입법현황→정부입법
 - ③ 해당부처 홈페이지: 입법예고/행정예고
- ▶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.

규제예보 리스트

□ 과학·기술

| 번호 | 규 제 명 | 주요내용 | 관련법령 | 피규제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AI 연구소 설립 주체·요건·절차·자료제출 등(신설) | 충분한 재정적 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보 등 설립허가 요건 규정 | (과기부)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| 민간 인공지능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|
| 2 |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이전 금지의 예외조건·절차 등(신설) |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허용 | (과기부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|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연구개발기관 |
| 3 |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·지정취소요건 등(신설) | (지정)충분한 인적·재정적 능력 및 시설 보유, (취소)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 | |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희망 기관·단체 |
| 4 |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기관 추가(신설) | 과기부 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통보 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이행 | |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연구개발기관 |
| 5 | 연구개발 참여제한사유 및 제재부가금 사유(신설) | 민감연구과제 성과 유출 등에 대한 참여 제한기간 및 제재부가금 규정 | | |

□ 건설기계

| 번호 | 규 제 명 | 주요내용 | 관련법령 | 피규제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 | 터널용 고소작업차 안전 기준(신설) | 과부하 경보장치, 범위이탈 방지장치 등 설치, 작업대 기준 마련 | (국토부)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| 터널용 고소작업차 제작·조립·수입사 |
| 7 | 조종실 내장재 내인화성 기준(신설) | 지게차(250mm), 트럭식건설기계(102mm), 이외의 건설기계(200mm) 연소속도 규정 | | 밀폐형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 제작·조립 및 수입사 |
| 8 | 안전문구 표시방법(강화) | (현행)후면에 안전표지→(개정)좌·우·후면에 부착하되 구조상 불가능 시 제외 가능 | | 건설기계 제작·조립·수입사 |
| 9 | 피견인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설치기준(강화) | 견인차량과 연동 작동하는 조명장치 설치 의무화 | | 피견인 건설기계 제작·조립·수입사 |
| 10 | 운행기록계 설치기준(강화) | (현행)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최고속도 60km/h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 예외→(개정)최고속도제한장치 삭제 | | 도로용 건설기계 제작·조립·수입사 |
| 11 | 항타 및 항발기 안전기준(강화) | 권상장치, 안정각, 유압배관 등 안전장치 기준 마련 | | 항타·항발기 제작·조립·수입사 |

□ 농림·식약

| 번호 | 규 제 명 | 주요내용 | 관련법령 | 피규제자 |
|----|--|---|--|--|
| 12 |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구체화(강화) | (현행)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 사용금지 →(개정)「약사법」 상 의약품 및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| (식약처)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의약품의 명칭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·광고하려는 영업자 |
| 13 |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내용 변경 시 변경신고(신설) | 닭·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| (농식품부) 가축전염병 예방법 | 닭·오리 사육농가 |
| 14 |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출입정보 관리(신설) | 정부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| |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|
| 15 |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축산관계자 모임금지(신설) | 가축전염병 발생 고위험 시기에 축산관계자가 대면모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 | | 축산관계자 |
| 16 | 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(신설) | 대기업, 공시대상기업집단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 | (농식품부)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매출액 80억원 초과 한우 생산기업 |
| 17 |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(신설) | 저탄소 영농활동 계획 수립, 한우 사료 생산계획 수립 등 | (농식품부)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매출액 80억원 초과 한우 생산기업 |
| 18 | 한우 생산업 참여 기업과 한우농가의 협력계획(신설) | 한우 생산업 참여가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등을 수립 | (농식품부)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| 동물용의약품 제조·수입업체 |
| 19 |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 시험방법(신설) |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을 국제기준(VICH)에 부합하도록 개정 | (농식품부)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 받은 업체 |
| 20 |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의 판매실적 보고 의무화(신설) | 업체명, 성명, 사업장소재지, 품목, 판매량 및 판매일자, 업종별 판매처 등을 연 1회 보고 | | |

□ 금융·관세

| 번호 | 규 제 명 | 주요내용 | 관련법령 | 피규제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21 | 금융복합기업집단 평가대상 금융회사 및 업무 추가(강화) | 금융복합기업집단 포함 대상에 '전자금융회사' 추가 | (금융위)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규정 | 전자금융회사, 금융복합기업집단 |
| 22 | 증권사 유동성비율 준수 의무 확대(신설) | 시장 위험성을 반영한 조정 유동성 비율을 전 증권사가 준수해야 함 | (금융위) 금융투자업규정 | 증권사 |
| 23 | 협력인정업체 등록요건·관리(신설) | 개인통관고유번호 대신 일회용 인증제도 도입, 협력인정업체 등록 시 간소화된 절차로 수입 가능 | (관세청)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| 전자상거래업자 |

□ 국토

| 번호 | 규 제 명 | 주요내용 | 관련법령 | 피규제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4 |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(강화) | (현행)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, 선하증권, 항공화물운송장, 외국인 시 증명서류→ (개정) '사업계획서' 추가 | (국토부)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| 국제물류주선업체 |
| 25 |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관련 처분(강화) | 등록기준 미달 또는 허위신고 시 (현행)1차(경고),2차(정지30일),3차(60일),4차(등록취소)→(개정)1차(정지30일),2차(60일),3차(취소) | | |
| 26 | 주민대표단 요건·구성절차·운영방법·동의요건 등(신설) | (요건) 대표단 명단, 업무, 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(절차) 승인신청서 제출, 지자체장 검인 신청 등 | | 정비사업 참여 주민 |
| 27 |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요건 등(신설) | (요건)토지등소유자 50% 초과 동의 (절차)사업시행방식 및 협약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| (국토부)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|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참여 토지등소유자, 사업시행자 |
| 28 | 특별정비구역 제안 요건 등(신설) | (요건) 토지등소유자의 50% 초과 동의 (제안서내용) 예비사업시행자 명칭, 소재지, 시행 예정 시기 등 | | 사업시행자 |

□ 기후

| 번호 | 규 제 명 | 주요내용 | 관련법령 | 피규제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9 | 하천점용허가 신청 제출 서류 추가(신설) |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하천시설 훼손 우려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| (기후부) 하천법 시행규칙 | 하천점용허가 신청자 |
| 30 | 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(신설) | (지정) 금융결제원,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 수행기관 (지정취소) 정상적 납부대행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,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| | 전자결제기관(금융결제원 은행, 신용카드사) |
| 31 |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(신설) | 장비 진입로를 막아 긴급한 하천 유지·보수 공사 곤란, 하천시설의 정상적인 계측·감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 | (기후부) 하천법 시행령 | 불법 점용자, 피허가자 |
| 32 |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(신설) | 허가 실효로 원상회복 명령을 시정기간 내 미이행 : 300만원 / 조치명령을 시정기간 내 미이행 : 500~1,000만원 | | |
| 33 |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사전 고지(신설) |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하천시설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관리청에 미리 고지 | | 점용허가 신청자 |
| 34 |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 처분 기준(강화) | 완료보고서 거짓 작성·제출, 평가결과 기준 이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 : (1차) 영업정지 3개월, (2차) 등록취소 | (기후부)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| 석면해체작업감리인 |
| 35 | 감리인 변경등록 신청기한 (강화) | 변경등록시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| (기후부)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| 석면해체작업감리인 |

□ 일반

| 번호 | 규 제 명 | 주요내용 | 관련법령 | 피규제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36 | 의료인의 금지행위(신설) |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SNS 등에 타 의료인 특정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| (복지부) 의료법 시행령 | 의료인 |
| 37 | 의료인의 금지행위(신설) |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SNS 등에 타 의료인 특정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시 자격정지 3개월 등 | (복지부)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| 의료인 |
| 38 |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대상 용량 확대(신설) | (현행)정격출력 200kVA 이하 →(개정)정격출력 500kVA 이하 | (산업부)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| 전기차충전기 제조·수입업체 |